1.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회적으로 규정된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해결 방식이 달라진다. 개인심성을 중심으로 문제를 보면 개인심성적 차원에서 해결책이 나오고, 법을 중심으로 보면 법에 맞춘 해결책이 나온다, 정책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정책차원의 해결책이 나온다.

우리 사회가 장애를 다루는 주류 시각은 1)장애인을 동정을 불러일으켜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야기이거나, 2)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이웃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거나, 3)장애를 극복한 장애인의 영웅담에서 드러난다.

장애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이 갖는 시각은 사회적으로 규정되는데, 이는 지배적 문화가 장애를 어떻게 투영하는가에 달려있다.

2.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

‘장애’를 정의내리는 것에는 혼란이 있다. 가령 장애인의 죽음을 추도하는 의례에서 그가 장애인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경우나, 장애인이라는 말이 없는 사회가 장애가 해방된 사회라는 말 속에서 드러난다. 이는 ‘장애’라는 하나의 기표에 여러 기의가 동시적으로 기입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장애에 대한 정의에는 1)손상을 장애로 정의하는 주류적, 의학적 모델이 있고, 2)손상은 특정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장애로 된다는 대안적, 사회적 모델이 있다. 1)의 경우 손상->기능제약->불능->사회적 불리 로 봄으로써, 장애의 본질과 원인은 개인이 몸에 지니는 손상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해결책도 손상을 치료하거나, 재활을 통해 해결한다. 2)는 손상->노동력의 상품화, 경쟁과 효율, 개인주의, 물리적·문화적 장벽, 사회적 차별 ->장애의 도식으로 본다.

3. 인간이 지닌 다양한 차이들 : 누가 누구를 정의하고 규정하는가?

가. 비장애인의 몸을 기준으로 한 임의적 범주, 장애인

인간의 세계에는 정의하는 자와 정의당하는 자가 존재한다.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우리 사회가 규정한 범주 내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그 차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간의 차이보다 큰 경우가 있다.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함께 있는 경우 의사소통의 측면에서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사이의 간극이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의 간극보다 크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에는 목발이용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간극은 비장애인과 목발이용 장애인과의 간극보다 크다. 이러한 예들은 ‘장애인’이라는 말이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분류되고 정의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나. 장애인에 대한 명칭과 정치적 함의

한국사회에서는 1970년대까지 장애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분명치 않았다. 불구자, 폐질자, 잔질자 등으로 불리었었다. 1981년에 심산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라는 표현이 공식화 되었는데, 영어의 디스어빌리티disability를 일본의 번역어 장해자障害者라는 한자 표기를 참고해 다시 옮긴 것이다. 그런데 한 장애인 단체가 ‘장애우障碍友’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는데, 스스로를 벗友 이라 칭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장애인의 시선에서 장애인을 규정하는 용어이다.

정확한 정치적 비판의 지점이 수반되지 않은 막연한 완곡어법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이를 해결해야한다는 문제의 핵심과 무관하거나 이를 비켜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Differently abled people(다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영어식 완곡어법이 이러한 예이다.

영어권에서도 처음에는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Disabled people(장애를 갖게 된 사람) 다음에는 People with disabilities(장애를 지닌 사람), 최근에는 Differently abled people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여 많이 쓰이고 있다. People with disabilities 라는 표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런 용법이 인간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으로 취급하여 보다 올바르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장애가 사회적인 것임을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Differently abled people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는 것을 판단하는 준거를 필요로 하며, 이는 또한 비장애인의 그것일 수밖에 없다.

다. 휠체어 장애인, 농아인, 여성장애인

잘못 이용되는 장애인 지칭의 경우를 검토해 보도록 한다. 먼저 휠체어장애인과 목발장애인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도구가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표현 될 수는 없다. 휠체어이용 장애인, 목발이용 장애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구분된다. 후자는 청각기능의 손상으로 자세 및 방향감각을 유지하는 상태에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하고, 청력장애는 다시 농인deaf person과 난청인hard-of-hearing person으로 나뉘는데, 우리는 흔히 농아인聾啞人으로 부르는 실수를 범한다. 농聾은 듣지 못함을 아啞는 말하지 못함을 의미하는데, 농인이라고 해서 모두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수화를 사용하거나 상대의 입 모양을 보고 말하기도 하는 구화인口話人이 존재한다.

장애를 지닌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는 ‘장애인=남성장애인’이라는 개념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다.

라.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

장애인과 대비하여 장애를 지니고 있지 않은 집단을 어떻게 지칭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보통 정상인이나 일반인이라는 용어를 쓰곤 하는데, 이는 장애인을 비정상인 혹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탈자로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라는 경계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비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르다. 하지만, 사람들은 비장애인이라는 말에 왠지 모를 석연치 않음을 느낀다. 그 이유는 1)다른 소수자들, 여성, 동성애, 흑인의 경우 단어 자체에 가치판단이 개입되지 않으나, 장애라는 단어 자체에는 일정한 부정적 가치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2)비장애인이라는 말이 장애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을 중심으로 규정된 용어는 비장애인들을 불편하게 한다. 3)장애라는 말 속에 이미 부정적 가치판단을 내포하기에 부정적인 것이 아님으로 규정되는 것은 비장애인의 위치와 정체성을 명확히 해주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하게 한다.

4. 자본주의 사회의 성립·발전과 장애 문제

가. 자본주의의 성립과 함께 생겨난 근대적 개념과 범주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여기는 많은 단어와 개념들은 근대 자본주의가 탄생하고 발전하면서 생겨난 것이거나 그 의미가 새롭게 부여된 것이다. 장애disability라는 개념 또한 근대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이전에도 우리가 장애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는 있었지만, 그것을 장애라는 개념으로 포착하지는 않았다. 그저 다리를 저는 사람, 맹인, 농인, 발달이 늦는 사람 등이 있었을 뿐이다.

나. 근대적 노동자의 형성 과정과 장애인의 탄생

자본주의의 성립은 새로운 체제를 움직여 나갈 근대적 노동 주체를 필요로 했다. 그 주체를 만들기 위해 진행된 과정은 1)이전의 노동 현장에서 사람들을 강제로 분리시키는 것, 2)분리된 사람들을 새로운 노동 공간에 익숙해지도록 훈육시키고 밀어 넣는 것이다.

농민을 토지로부터 내쫓아 대대적인 무산자를 창출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런데 토지에서 쫓겨났던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적 노동자가 되지 못하고 부랑자나 거지가 되어 거리를 떠돌게 되었다. 이는 농업 사회의 생활 양태와 노동방식이 익숙한 사람들에게 공장이라는 새로운 공간은 좀처럼 적응할 수 없는 무엇이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 이전의 농업 노동과 가내 수공업은 노동주체의 작업 방식과 속도, 노동시간이 유연하게 보장되었고, 한 개인은 하나의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노동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했으므로, 노동에 대해 자신만의 통제권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런 노동의 형태 속에서는 손상된 육체를 지닌 사람들도 ‘가족 공동체’ 또는 ‘장원 공동체’라는 집단적 노동력의 일부로 통합되어, 나름의 속도와 방식으로 농업과 가내 공업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근대적 공장 내에서는 노동을 하는 사람은 부품으로 취급되었다.

사람들을 토지로부터 이탈시키는 과정과 더불어 이들을 임노동 관계로 포섭하기 위한 국가의 강제 수용과 훈육이 진행된다. 서구에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구빈원workhouse는 거리의 부랑자들을 수용했던 강제 노역장이었다. 국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효과적인 훈육과 나태 방지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적응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적응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분리시켰다. 즉 일할 수 있는 몸the able bodied와 일할 수 없는 몸the disabled bodied를 규정하고자 했고, 이로부터 오늘날과 같은 장애라는 개념이 형성되었다. 근대의 장애인이라는 구분은 임노동으로 포섭 불가능한 사람들, 불인정 노동 계층을 지칭하는 개념이었던 것이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이들의 임노동으로부터의 배제는 심화된다. 테일러 시스템과 포드주의 생산방식은 노동을 더욱 합리화 시켰고, 육체의 정밀한 기계적 동작과 더 빠른 연속성의 반복을 요구하였다. 이는 손상된 육체를 지닌 사람들을 점점 더 배제시켜 갔다.

‘노동’ 또한 객관적, 불변적인 것은 아니다. 몸을 움직여 어떤 일을 했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만 노동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 체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1)상품은 팔려야만 그 가치를 실현하게 되

며, 작은 손상이라도 있다면 할인매장에서 헐값에 처분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활동이 노동으로 인정되는가의 기준은 ‘자본을 위해 이윤을 창출하거나 그에 도움을 주는가’의 여부이다. 2)노동의 상품화는 노동활동과 그에 따른 분배 모두 개별화를 가져왔다. 자본주의 이전의 노동은 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했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을 기준으로 한다. 고용주가 자신의 농장에서 하루 20개의 과일을 따는 것을 노동의 기준으로 정해놓을 때,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장애인은 노동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들에서의 장애인 정의에서 불인정노동 계층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규정은 곳곳에 남아 있다.

다. 표준과 정상 개념의 강화, 통계학과 우생학의 발달

표준개념의 강화는 자본주의의 속성 자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상품은 일정한 규격과 표준에 따라 생산되어야 하며 그래야 원활한 생산과 교환이 가능하다. 표준과 기준의 강화는 이와는 또 다른 맥락을 지니고 있는데, 모든 인공적 인위적 과정은 표준을 필요로 한다. 자본주의의 발전이 새로운 민족 국가의 형성을 필요로 했던 것은, 자본이 유통되고 대량으로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경제 권역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인구와 생산품과 세금의 징수가 확대되자 통계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통계학의 평균은 표준을 의미하며, 정상의 다른 이름이다. 통계학이 제공하는 중심 통찰이 인구는 정상 분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학은 정상에서 벗어난 인구에 대한 관심을 국가 정책과 연결시켰다. 찰스 다윈은 《인간의 혈통과 성도태》에서 수용소와 구빈법을 통해 허약한 구성원들의 종을 증식시켰으며, 이는 치명적인 오류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치명적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면, 선별적 증식은 논리적으로 열등한 인종의 증식 제한으로 이어진다. 스펜서의 계승자이자 다윈의 사촌인 갈튼은 ‘우생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냈다. 우생학은 유전학에 근거한 인간 개량학을 말한다. 이에 근거해 많은 장애인들이 강제 불임을 당해야 했다.

미국에서 시작된 우생학적 광풍은 나치 독일과 북유럽으로 옮겨갔다. 독일 나치 하에서는 유태인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조직적 대량 학살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전범재판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전승국 대부분이 이와 유사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북유럽에서는 덴마크를 시작으로,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아일랜드에서 각각 단종법이 제정되었다. 독일의 우생학을 받아들인 일본 역시 국민우생법을 제정하였고, 1996년까지 존재했다. 우리나라 역시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말까지 소록도 나환자 수용소에서 광범위한 강제 불임수술을 시행했고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하도록 하여, 장애아의 출산을 합법적으로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우생학적 유산을 그대로 나타낸다.